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05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정예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7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별첨붙임)과같이일부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행한다.

② K60335-1(4.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은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 K60335-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③ K60335-2-2(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2부: 전기진공청소기및 물흡수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K60335-2-2진공청소기및 물흡수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④ K60335-2-3(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3부: 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 적용안전기준인K60335-2-3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⑤ K60335-2-4(4.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부: 전기탈수기의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 적용안전기준인K60335-2-4전기탈수기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⑥ K60335-2-8(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부: 면도기, 이발기,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K60335-2-8면도기, 이발기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⑦ K60335-2-9(5.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9부: 토스터, 그릴, 로스켓 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에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K60335-2-9토스터, 그릴, 로스켓 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⑧ K60335-2-10(5.0)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10부: 마루청소기및 물 걸레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은중 전의적용안전기준인K60335-2-10마루청소기및 물걸레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과병행적용한다.

⑨ K60335-2-11(6.1)자정용및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1부: 회전식세탁물건조기의개별요구사항

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11(회전식 세탁물 건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㉔ K60335-2-12(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보온플레이팅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12(온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㉕ K60335-2-13(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3부: 전기튀김기, 전기프라이팬(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13(전기튀김기, 전기후라이팬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㉖ K60335-2-14(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4부: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14(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㉗ K60335-2-17(2.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전기모포, 전기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1(전기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㉘ K60335-2-23(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피부손질 또는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1(피부 및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㉙ K60335-2-24(6.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4부: 전기냉장고, 아이스크림기 및 제빙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24(전기냉장고 및 제빙기의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㉚ K60335-2-25(5.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자레인지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25(전자레인지에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㉛ K60335-2-26(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전기시계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26(전기시계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㉜ K60335-2-27(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부: 피부용자의 선 및 적외선 방출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27(피부용자의 선 및 적외선 방출기의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㉝ K60335-2-28(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부: 전기재봉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28(전기재봉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㉞ K60335-2-29(3.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충전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1(태데리충전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㉟ K60335-2-30(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1(실내용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㊱ K60335-2-5(4.0)자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은 종전의 적용안전기준인 K60335-2-5(전기식기세척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과 병행 적용한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7 - 27 호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에따라 공산품의안전인증무를수행하는안전인증기관의지정을다음같이공고합니다.

2007년 2월 8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 목 적: 소비자의위해도가높은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대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함
2. 대 상: 공산품안전인증무출행하고자하는기관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제12조별표 1의안전인증기관의지정기준에적합한단
3. 안전인증기관의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안전인증업종범위	비고
제1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박길복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 02-2102-2500)	· 가솔린엔진 · 유모차 · 보행기 · 유아용 침대 ·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 키보드 · 물놀이기구 · 자동차용 승인이브호장치 · 승차용 안전크 · 운동용 안전크 · 비탄총 · 가스라이터 · 스프레이놀이기구 · 휴대용 예초기 의 날 · 물휴지 · 트리달린 코크(16개 품목)	*모터 달린 브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KOLAS 인정 후 인증업무 실시
제2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이브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2 (☎ 02-2164-0051) 가속시험	· 자동차용 저압터어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휴대용 예초기의 날 · 물휴지(5개 품목)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KOLAS 인정 후 인증업무 실시
제3호	한국가기유시험연구원	김은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승자동 349-2 (☎ 031-785-1200)	· 가속시험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휴대용 예초기의 날 · 트리달린 코크 · 물휴지(5개 품목)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트리달린 코크 및 물휴지는 KOLAS 인정 후 인증업무 실시
제4호	한국의료시험연구원	유정석	서울시 중대동구 용두동 232-22 (☎ 02-3668-3000)	· 가속시험 · 유모차 · 보행기 · 유아용 침대 · 물휴지(5개 품목)	*유모차, 보행기 및 유아용침대는 KOLAS 인정 후 인증업무 실시

4. (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안전인증무범위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험· 검사기관(KOLAS) 미인정 품목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안전인증무를 실시한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61호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제3항에따라제품 안전감시원의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제품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요령은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제3항에따라 제품안전감시원의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요령은소비자제품안전감시원으로위촉하여운영하는기술표준원장과유통되는제품에대한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을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위탁운영하는소비자·제품안전관련단체(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제품안전모니터링"이라함은유통되는제품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안전관리대상제품및 기타안전위해의우려가있는제품에대한정보수집등을 행하는시장감시활동을말한다.
2. "제품안전감시원"이라함은유통되는제품에대하여제품안전모니터링을수행하는자를말한다.

제4조(제품안전감시원의자격) 제품안전감시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산품· 전기용품의안전관리에관한지식과제품안전모니터링 경험자
2. 제품안전관련분야의공무원으로무한경력이있는자

제5조(제품안전감시원교육등) ①기술표준원장또는수탁기관의장이 제품안전감시원에대하여실시하는교육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품안전감시원의임무및활동요령
2. 정부의제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주요시책
3. 위해제품식별요령
4. 제품안전관리에관한법령· 제도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등

②제1항에의한교육을제품안전감시원에대하여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의또는현장실습을분하여실시할수있다.

제6조(제품안전감시원위촉) ①기술표준원장은소비자단체장등으로부터제4조의자격이있는자를추천받아 제품안전감시원으로위촉한다.

-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 발급대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제품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 ④ 제품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제품안전감시원의 해촉)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품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안전감시원의 제품안전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제품안전모니터링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2.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3.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 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제품안전모니터링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모니터링 행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품안전감시원 운영)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모니터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품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① 제품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 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업무의 지원
3. 시·도지사의 불법제품 환수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안전감시원의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제품안전모니터링 실적의 정리·분석
3.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감시원에게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 교통비를 포함하여 100,000원으로 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제품안전모니터링 활동 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대한안전관리제도를위해정도에따라강제안전인증과자율안전확인으로차별화하는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개선하고, 법운영생리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현행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품목중위해성이낮은품목과그동안관리가 미흡했던신개발제품등을「자율안전확인대상」로지정하여제조자가스스로안전성을확인·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하고, 위해성이높은품목은현행「강제인증대상」로유지하되품목수를최소화함(안제2조 및제5조의3,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경우에도강제인증대상과동일한벌칙 적용을위하여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않은경우와신고하지않은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취위로표시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 한경우에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것도록함(안제5조 및 16조)
- 다. 「불법전기용품」판매의 경우에도제조· 판매와동일하게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함(안제7조 및 제5조)
- 라. 안전관리대상외의전기용품에의한안전사고발생사안조사 실시하고그 결과에따라, 제조· 판매중지권고, 공표등의조치가가능하도록함(안제9조의3 및 제10조의)
- 마. 전기용품제조자와안전관리관련 기관에대한시험장비· 연구개발비용의 지원을할 수 있도록함(안제10조의5)
- 바. 언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불법· 불량전기용품유통정보를공표할수있도록함(안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없음
- 다. 합 의:
- 라. 기 타:

※ 담당: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전기용품안전팀연구관윤기환(☎509-7242~45)

개정법률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다음같이개정한다.

법률제 호

제2조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라함은구조· 사용방법등으로인하여화재· 감전등의위험및 장해가발

생활우려가 크다 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4항중 ‘산업자원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스스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 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대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에 맞춘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율안전확인표시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1항중 “電氣用品輸入· 販賣業者”을 “전기용품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로 하고 “販賣 하거나 販賣를 할”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율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 사용중지) ① 전기용품의 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품을 판매· 대여 하거나 판매· 대여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제목적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다.
제8조의제1항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라 한다)이로 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電氣用品輸入· 販賣業
者에~~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라~~ 한다.

제8조의제1항제1호중~~아니한때~~“를” 아니하거나또는제5조의3제1항~~규~~정의한자율안전확인~~의~~인고를하
지아니한때로 한다.

제8조의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6조2의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의~~인고를하지아니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제조~~
안전확인~~의~~표시등이나이~~표~~사한표시를한때

제8조의제2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電氣用品輸入· 販賣業者~~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또는전기용품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라~~하고, 당해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는 電氣用品輸入· 販賣業者~~를~~ 당해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의”로 한다.

제8조의제3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라~~한다.”

제10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3(안전성조사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 전기용품으로서중에유용되는전
기용품중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해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대
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전기용품에대한안전성조사를~~한다~~.

1. 어린이·노약자·장애인등의생명에위해를가할우려가~~있는~~
2. 사고발생시신체의상해정도가심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
3. 사고발생에따른~~위~~해우려지역이광범위하여신속한조치가필~~요~~
4. 그밖에전기용품의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10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4(안전성조사결과에따른조치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10조의2 규정에따른안전성조사를실시한
결과당해전기용품에대한위해성이확인된경우에는당해전기용품의제조업자· 수입업자~~를~~ 판매통지·
대여업자에대하여판매금지· 대여금지· 개선· 수거~~요~~를권고할수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1항의규정에따른판매금지· 대여금지· 개선· 수거~~요~~는과기의권고만으로는그 위
해를방지하기가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조업자· 수입업자~~를~~ 판매통지· 대여업자에대하여판매
금지· 대여금지· 개선· 수거~~요~~를의권고를한사실~~을~~ 표할수있다.

③제1항의규정에따른판매금지· 대여금지· 개선· 수거~~요~~의 권고및 제2항의규정에의한공표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5(전기용품안전관리~~에~~한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전
기용품의제조업자와전기용품의안전관련기관에대하여전기용품의안전에관한시험장비· 연구개발~~에~~

요되는비용과기술등을지원할수있다.

제11조제1항중 제1호내지제4호또는제6호에를 제1호내지제7호또는제9호에“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제조업과“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의” 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역”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6조의”를“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제6조역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제4호로, 제4호를제6호로, 제5호를제8호로, 제6호를제9호로하고, 동항에제3호및 제5호와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5조의3의규정에따른자율안전확인에관한사항

5. 제6조의2의규정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에관한사항

7. 제7조의2의규정에따른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판매·사용금지등에관한사항

제11조제2항을제3항으로, 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또는·도지사는제1항각호의검사결과에대하여언론매체를통하여공표할수있다.

제15조제4호중 제5조의2의규정에의한안전검사를받은”를 제5조의2의규정에의한안전검사받은자와 제5조의3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한자”로 하고, 제5호중 製造한者”를“ 제조하거나제5조의3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계좌”하고, 동조제8호중 販賣하거나販賣를目的으로輸入·陳列또는보관한者”를“ 판매·대여하거나판매·대여를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관한자.”로하여동조를제9호로하며, 동조에 제8호및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제6조의2의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하여자율안전확인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또는그용좌에자율안전확인표시또는이표시한표시를한자

10. 제7조의2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신고의표시등이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판매·대여하거나판매·대여를목적으로수입·진열또는보관한자. 다만제8조제1항4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제16조제3호를제4호로하고, 제4호를제6호로, 제5호를제7호로하며, 제6호를제8호로, 제7호를제9호로하고, 동조에제3호및 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6조의2의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을임의로변경하거나삭제한자

5. 제7조의2의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자율안전확인의표시등이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사용한자

부 칙

제1조이법은2009.1.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을받은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법 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정된경우에는이법 제5조의3의규정에따라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자율안전확인시험을받은것으로본다.